「외국집합투자증권 매매거래에 관한 표준약관」 개정안 신.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2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 ①~② (생 략) ③ 회사는 월간 매매내역.손익내역, 월말잔액.잔량현황(이하 "월간 매매내역등"이라 한다)을 다음달 20일까지, 반기동안 매매, 그 밖의 거래가 없는 계좌에 대하여는 반기말 잔액.잔량현황을 그 반기 종료 후 다음달 20일까지 제1항제2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월간 매매내역등 또는 반기말 잔액.잔량현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. 1.~3. (생 략) **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**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( )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,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. 다만,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·개정에 따	**제12조(매매거래 등의 통지)**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금융투자상품의 거래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1.~3. (현행과 같음) **제22조(약관의 변경 등)** ① ---------- ---------- 변경내용(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, 신·구대비표 등)을 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

2023-01-27 12:55 202203777

현 행	개 정(안)
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.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( )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~⑥ (생 략)	---------- ② ----------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---------- ----------개별통지(신·구대비표 포함)---------- 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③~⑥ (현행과 같음)

2023-01-27 12:55 202203777